



'25. 6. 16.(월) 10:00
예결특위원회의실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 출 일 : 2025. 5. 30.
- 회 부 일 : 2025. 6. 12.
-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·운용하며 기금 설치 등으로 2025년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함

II.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1. 기금조성규모 총괄

(단위 : 천 원)

기 금 명 (설치근거)	설치 년도	2024년도말 조 성 액	2025년도말 조 성 액	증 감	비 고
합 계		0	46,565,854	46,565,854	
사회복지기금 (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	2025	0	6,018,737	6,018,737	복 지 정 책 과
재해구호기금 (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)	2025	0	40,547,117	40,547,117	복 지 정 책 과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(1) 수 입
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	수 입 계 획			
	항목	수입액	기정액	증감
합 계		48,011,959	0	48,011,959
사회복지 기금	소 계	6,076,737	0	6,076,737
	이자수입	196,056	0	196,056
	기타수입	5,880,681	0	5,880,681
재해구호 기금	소 계	41,935,222	0	41,935,222
	전입금	7,933,434	0	7,933,434
	이자수입	1,093,501	0	1,093,501
	기타수입	32,908,287	0	32,908,287

(2) 지 출
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	지 출 계 획			
	항목	수입액	기정액	증감
합 계		48,011,959	0	48,011,959
사회복지 기금	소 계	6,076,737	0	6,076,737
	비용자성사업비	58,000	0	58,000
	예탁금	5,406,922	0	5,406,922
	예치금	611,815	0	611,815
재해구호 기금	소 계	41,935,222	0	41,935,222
	비용자성사업비	1,388,105	0	1,388,105
	예치금	40,547,117	0	40,547,117

(3) 기금조성 규모

(단위 : 천 원)

기 금 명	2024년도말 조 성 액 [㉠]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5년도말 조 성 액 ([㉡] = [㉠] + [㉢] - [㉣])	증 감 ([㉤] = [㉡] - [㉠])
		수입 [㉢]	지출 [㉣]		
합 계	0	48,011,959	1,446,105	46,565,854	46,565,854
사회복지기금	0	6,076,737	58,000	6,018,737	6,018,737
재해구호기금	0	41,935,222	1,388,105	40,547,117	40,547,117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 「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

☐ 사회복지기금

- 사회복지기금은 2025년도 「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정에 따라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고자 설치되었음
-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이자수입 1억 9,606만 원, 기타수입 58억 8,068만 원의 수입을 통해 비용자성사업 5,800만 원, 예탁금 54억 692만 원, 예치금 6억 1,181만 원을 지출하는 것임

-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, 장애인 합동결혼식,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등 포함되어 있으며,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5,800만 원을 편성하였음
- 동 변경안은 도내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기금 운용이라고 판단되나,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추가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□ 재해구호기금

- 재해구호기금은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무적 설치 기금으로 2025년도 「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」 제정됨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고자 설치되었음
-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전입금 79억 3,343만 원, 이자수입 10억 9,350만 원, 기타수입 329억 828만 원의 수입을 통해 비융자성사업 13억 8,810만 원, 예치금 405억 4,711만 원을 지출하는 것임
- 주요 사업으로 전시 및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,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, 타 시도 재해구호 지원,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사업을 위해 13억 8,810만 원을 편성하였음
-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

Ⅲ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: 별첨